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범국가적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범부처 인공지능 전략, 정책, 사업 조율 기능 확대(안 제2조)

인공지능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인공지능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대상으로 추가

나.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

1)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정책조율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을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상근직으로 규정

2)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종합적 대응을 위해 정부위원 재구성

다. 민간위원의 임기(제4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새롭게 임명되는 위촉위원의 경우 2년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조정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련 주요 정책”을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부위원장 1명”을 “3명 이내의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항제4호”를 “제3항제1호 또는 제3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

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으로, “위원장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을 “인공지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인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심신쇠약 등으로”를 “심신장애로 인하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과위원회 ·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을 “(분과위원회 · 특별위원회 · 자문단 및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 부지사 등을 인공지능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 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
2.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

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 · 조정한다</u> .	② ----- -- <u>심의 · 의결한다</u> .
1. 인공지능 <u>관련 주요 정책</u> 에 <u>관한 사항</u>	1. ----- <u>국가 비전 및 중장기</u> <u>전략 수립</u> ----- -----
<u><신 설></u>	2. <u>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u> <u>의 부처 간 조정</u> 에 관한 사항
<u><신 설></u>	3. <u>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u> <u>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u> <u>리에 관한 사항</u>
2. ~ 4. (생 략)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u><신 설></u>	7. <u>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u> <u>터 구축 및 활용 촉진</u> 에 관한 <u>사항</u>
5. ~ 14. (생 략)	8. ~ 17. (현행 제5호부터 제14 호까지와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제3조(구성) ① ----- --- <u>3명 이내의 부위원장</u> --- ----- --.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	② -----

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4. (생략)

④ (생략)

<신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

----- 제3항제1호 또는 제3항제4호-----

-----.

③ -----

-----.

-----.

1. -----

-----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
위원장

2. ----- 인공지능-----

--

3.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인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

<단서 삭제>

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 (생략)

제8조(분과위원회 ·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① ~ ③ (생략)

<신설>

② ----- 제1항-----

-----.

제5조(위원의 해촉)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분과위원회 · 특별위원회 · 자문단 및 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 등을 인공지능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제9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 ① (생략)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u>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u>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u><신설></u> <u><신설></u> ③ (생략)	<u>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 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u> 제9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다음 각 호의 사람</u> ----- ----- -----. 1. <u>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u> 2. <u>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u>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2 - 6122